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20호, 2025. 3. 18)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02호, 2024.1.2.)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1) 성년후견제 후견인후보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2) 절차조력에 관한 사무 및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에 관한 사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의 위탁 (안 제13조의2)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규정함

나. 후견인후보자의 요건 (안 제17조의2)

성년후견제 후견심판 청구 시 선임할 후견인후보자의 요건을 규정함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안 제39조제1항제8호 및 제8의2호)

절차조력에 관한 사무 및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 수행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립정신병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주무기관의 장으로 하는 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제4장부터 제7장까지를 제5장부터 제8장까지로 하고, 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

제4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후견인후보자의 요건) 법 제3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2. 후견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의 전담인력이 다음 각 목의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가.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 나. 「민법」에 따른 후견제도 및 후견인의 임무·책임 등에 대한 이해
 - 다. 그 밖에 성년인 정신질환자의 후견인으로서 후견사무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3. 법인이 후견인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을 것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것
 - 1)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업무
 - 2)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의 사무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 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후견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법원으로부터 후견인으로 선임(피후견인의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38조의2에 따른 절차조력에 관한 사무

8의2. 법 제38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조의2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 <u>1. 국립정신병원</u> <u>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을 주무기관의 장으로 하는 기관</u> <u>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신건강전문요원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u> <u>4. 그 밖에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u>
제4장 <u>보호 및 치료</u>	제4장 <u>복지서비스의 제공</u>

<신 설>

제17조의2 (후견인후보자의 요건)

법 제3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을 것

2. 후견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법인의 전담인력이 다음 각 목의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가.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나. 「민법」에 따른 후견제도 및 후견인의 임무·책임 등에 대한 이해

다. 그 밖에 성년인 정신질환자의 후견인으로서 후견사무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3. 법인이 후견인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을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것

1)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업무

2)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의 사무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후견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제5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

제6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신 설>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3조, 제34조 또는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권한·업무를 위임·위탁받거나 권역별트라우마센터로 지정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

3) 법원으로부터 후견인
으로 선임(피후견인
의 친족인 경우는 제
외한다)되어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5장 보호 및 치료

제6장 퇴원등의 청구 및 심사 등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 ① -----[illegible]

합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u>제4호부터 제8호까지</u>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 7. (생략) <u><신설></u> <u><신설></u> <u>8. ~ 17.</u> (생략) ② ~ ⑤ (생략) <u>제7장 벌칙</u>	-----. -----<u>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u>----- ----- ----- -----. 1. ~ 7. (현행과 같음) <u>8. 법 제38조의2에 따른 절차조력에 관한 사무</u> <u>8의2. 법 제38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u> <u>9. ~ 18.</u> (현행 제8호부터 제17호까지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u>제8장 벌칙</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3857